

법령자료

새 법령

❶ 법률 제11154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권재진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을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66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u><신설></u>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신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2 대통령령 제23437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권 재 진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인”을 “직인(職印)”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증서원부인증등)”을 “(증서원부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법무부장관이”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증인 단체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행하는 증서원부 및 인증부에 대한 인증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u>직인(職印)</u> 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시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u>간인</u>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u>법무부장관</u> 이----- ----- ----- 간인(間印) ----- ----. 다만, 직인의 간인은 <u>戳孔</u> (戳孔) 방식으로 감음할 수 있다.
<신설>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대통령령 제23438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권 재 진
법무부장관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을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조제”를 “조제(調製)”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법무부장관이”로, “배면”을 “뒷면”으로, “직인”을 “직인(職印)”으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증인 단체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하는 확정일자부에 대한 인증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 (생략)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기재전에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제5조(매수의 기재등)----- -----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경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배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 법무부장관인 ----- 뒷
면 -----
-- 직인(職印) -- 간인(間印) --.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
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국회 계류중 법률안

※ 편집자 주

아래 개정법률안 2건은 2011년도에 정부 또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12. 3. 현재까지 국회 내에서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못한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 향후 주요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를 게재합니다.

1 의안번호 14138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38
----------	-------

발의연월일 : 2011. 12. 9.

발 의 자 : 박은수 · 주승용 · 강창일 · 최영희 · 백원우 · 조영택
이미경 · 전현희 · 김부겸 · 양승조 의원(10인)

제안이유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명공증인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13조제1호 삭제).

개정안

법률 제 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8. (생략)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 ----- -----. <삭 제> 2. ~ 8. (현행과 같음)

2 의안번호 14434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434
----------	-------

제출연월일 : 2011. 12. 3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안 제56조의3 신설)

- 1) 현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으므로, 공증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2)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 3)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토지·특정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7조의2 및 안 제90조 신설)

- 1)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 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선서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2)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3)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

법률 제 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의2제6항”을 “제5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제56조의4 및 제4장 제56조의5로 하고,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4(중전의 제56조의3)제1항 중 “7일”을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제56조의5(중전의 제56조의4)제1항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를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로 한다.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7조의2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읽지 못하거나”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 중 “하게 하는”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을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검찰청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 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 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 (搬出)할 수 없다. 1.·2. (생략)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6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 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5.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 제57조의2제7항 ----- ----- -----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u> <u>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u> <u>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u> <u>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u> <u>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u> <u>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u> <u>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u> <u>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u> <u>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u> <u>위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u> <u>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되는</u>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생략)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위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위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하게 한다.

⑥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⑥ -----

--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

---.

1. -----

-----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3조, 제57조의2제2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

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

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검

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

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

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

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

나 면제한다.

법무부 지침 및 고시

❶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동에 관한 처리기준

법무부 2012. 3. 2.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구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 2005. 7. 28. 시행)으로 폐지된 후 동법 부칙 제6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동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 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한다.

②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 중 2인 이상은 공증인법 제15조의4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10. 2. 7. 시행)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공증담당변호사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의4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을 미달한 경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1인만 남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공증인법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구성원 신규가입) 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구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 2005. 7. 28. 시행) 시행 당시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신규가입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새로운 구성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공증인법 제15조의4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2.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처리기준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구성원가입 인가기준』(2005. 7. 27.자)은 폐지한다.

◇ 신규구성원 보충의 경우 필요사항

신규 구성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 ① 신규 구성원 변호사의 이력서,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2005. 7. 28. 이전 가입 구성원 명단(신고서 접수일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구성원에 한정하되, 그 구성원의 성명, 가입일자 및 생년월일을 명시하고, 합동법률사무소 가입일자에 관한 근거자료 포함)을 첨부하여
- ③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 법무부로 구성원 신규가입 및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 접수

■ 근거 : 법무부 법무과-1637(시행 2012. 2. 29.)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변동에 관한 처리기준 송부” 공문

2 법무부 고시 제10-05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7. 법무부장관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개발연구원 2. 공무원연금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인 법인 4. 한국연구재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대한지적공사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 한국소방안전협회 1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12. 도로교통공단 13.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4. 대한행정사회 1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8. 한국경비협회 19. 한국은행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 법인 21. 한국수출입은행 22. 한국자산관리공사 23. 금융감독원 2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5. 신용보증기금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7. 국방과학연구소 2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9. 군인공제회 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3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33. 한국교직원공제회
34. 한국교육개발원
35. 한국학중앙연구원
36. 서울대학교 병원
3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0. 한국마사회
41.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대한수의사회
4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6. 선박안전기술공단
47.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8.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9.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2. 대한변리사회
53. 한국디자인진흥원
54.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5. 중소기업진흥공단
56. 한국표준협회
57. 산업연구원
58. 한국군납조합
59. 에너지관리공단
60. 한국전기공사협회
61. 전기공사공제조합
62. 한국광해관리공단
63. 에너지경제연구원
64. 건설공제조합
65. 대한건설협회
66. 대한전문건설협회
67. 대한건축사협회
68. 대한측량협회
69. 해외건설협회
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 대한가족계획협회
7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 국민건강보험공단
75. 대한결핵협회
76. 한국건강관리협회
77. 한국환경자원공사
78. 환경보전협회
7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0. 한국산업인력공단
81. 한국선급
82. 해운산업연구원
83. 한국도선사협회
8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85. 한국해운조합
86.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87. 교통안전공단
88. 한국공항공사
89. 정보통신공사협회
90. 한국전파진흥원
91. 별정우체국연합회
92. 한국자유총연맹
93. 한국방송광고공사
9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5. 영화진흥위원회
96. 독립기념관
97. 대한법률구조공단

98. 대한적십자사
99. 한국소비자원
100.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01. 한국환경공단
102. 기술신용보증기금
103. 보험개발원
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5. 한국국방연구원
106. 전쟁기념사업회
107. 한국사학진흥재단
108. 한국방송공사
109. 방송문화진흥회
110. 대한체육회
11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14. 한국식품연구원
115. 생산기술연구원
116. 한국가스안전공사
117. 한국전기안전공사
118. 전문건설공제조합
119. 국립공원관리공단
1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 국민연금공단
122. 한국노동연구원
123. 한국산업안전공단
1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5. 한국정보화진흥원
126. 한국법제연구원
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0.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31. 통일연구원
132. 한국행정연구원
133. 한국기술사회
134. 한국자연보존협회
135. 한국국제협력단
136. 한국국제교류재단
13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8. 한국조세연구원
139. 한국거래소
14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4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14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4. 한국지역난방공사
145. 한국수출보험공사
14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47. 한국교통연구원
148. 한국철도시설공단
14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50. 한국전파진흥협회
151.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52. 한국정보문화센터
153. 정보통신공제조합
154. 한국산업표준원
155. 한국계량측정협회
156. 한국주택금융공사
157. 한국철도공사
158. 정부법무공단
15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3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15. 법무부장관

- | | |
|--|---|
| 160. 전국재해구호협회 | 1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16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173. 한국동위원소협회 |
| 16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174.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 16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7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 164. 경찰공제회 | 176.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
| 16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177. 세계태권도연맹 |
| 16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178.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
| 167. 태권도진흥재단 | 178-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16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179.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 169. 경기도시공사 | 180. 무장초등학교 100년 장학회 |
| 1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181.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 |
| 171. 과학기술인공제회 | 182.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
| | 183. 한국지역진흥재단 |

4 법무부 고시 제2012-00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7. 법무부장관

- | | |
|----------------------|---|
| 184.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1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18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9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186. 국방기술품질원 | 19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18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196. 재단법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 188. 한국건설감리협회 | 197.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
| 189.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198. 재단법인 세종재단 |
| 1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 재단법인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
| 191. 국토연구원 | |
| 19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